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75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최혜영·류호정·주철현

오영환 · 김병주 · 맹성규

백혜련 • 김홍걸 • 조오섭

윤준병 · 송재호 · 윤미향

유정주 • 박주민 • 이규민

이상헌 · 이재정 · 홍정민

이성만 · 정성호 · 강준현

박홍근 • 이광재 • 이은주

이용빈 · 장경태 · 김용민

이소영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숲접근성 강화를 위해 숲과 공원 내에 무장애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한숲길임.

그러나 현재의 무장애 나눔길 내에 필요한 편의시설(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등)이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까 염려하는 마음에 무장애 나눔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 23조의2).

법률 제 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숲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	
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영·관리하여야 한다. <u><후단 신</u>	<u>이 경우 장</u>
<u>설></u>	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